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단체·경기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권한 규정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72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단체·경기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권한 규정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2. 22.
3. 회 부 일: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평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기부금 모집 및 사용 시 제도적 제약에 놓여있으며,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체육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체육단체·경기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권한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기부금품 등) ①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방법, 처리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사·경영·예산 등의 실질적 지휘·통제

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됨¹⁾.

또한, 적극적인 ‘모집’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탁’²⁾하는 금품 역시 원칙적으로 접수가 제한되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탁 금품의 접수가 허용됨³⁾.

한편, 대한체육회 등의 체육단체·경기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아님에도,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견이 있어 기부금품 모집 승인단계⁴⁾에서 제한을 받는 상황임.

- 대한체육회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경우, 「법인세법 시

1)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 ‘모집’: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로서,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아 사전 신고·등록, 결과보고, 공시 등 엄격한 법적 절차와 제한이 요구됨.

기부금품 ‘기탁’: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증여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기탁금 접수가 불가능함.

3) 「기부금품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4) [참고자료 1] 기부금품 모집 등록절차 흐름도

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및 하위 법령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함에 따라 「기부금품법」 상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한체육회가 접수하고 있음⁵⁾.

[『기부금품법』 질의 회신(행정자치부, '16.8.)]

- | |
|--|
| <p>○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대표자의 임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이나 정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사용</u>하고 있어- <u>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기관에 해당</u>한다 할 것이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민국의 비장애인·장애인 체육 대표 단체로서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자체 예산 고갈⁶⁾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경기단체의 국고 및 지방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개인과 단체의 기부를 통한 체육분야 사회 공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참고자료 2] 대한체육회 기부금 접수 관련 법령

6) 대한체육회 자체예산 규모(백만원): ('24) 18,782 → ('25) 14,821 → ('26) 14,142('24년 대비 △ 4,640, △24.7%)

※대한체육회 자체예산은 ①사무처 수입, ②선수촌 수입, ③체육회관 수입, ④인재개발원 수입, ⑤기부금 수입으로 산정되며, 이중 기부금 수입은 '24년 1,142백만원에서 '26년 122백만원으로 약 90%감소하였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유사한 사례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⁷⁾,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예술인단체 및 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문화예술 기부금사업 현황(2018년 ~ 2024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모금	기부금 모금액(억원)	232	307	182	182	170	173	212
	기부금 모금 건수	17,784	22,595	22,342	22,905	29,661	31,810	36,360

다만, 체육단체·경기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률 개정 없이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등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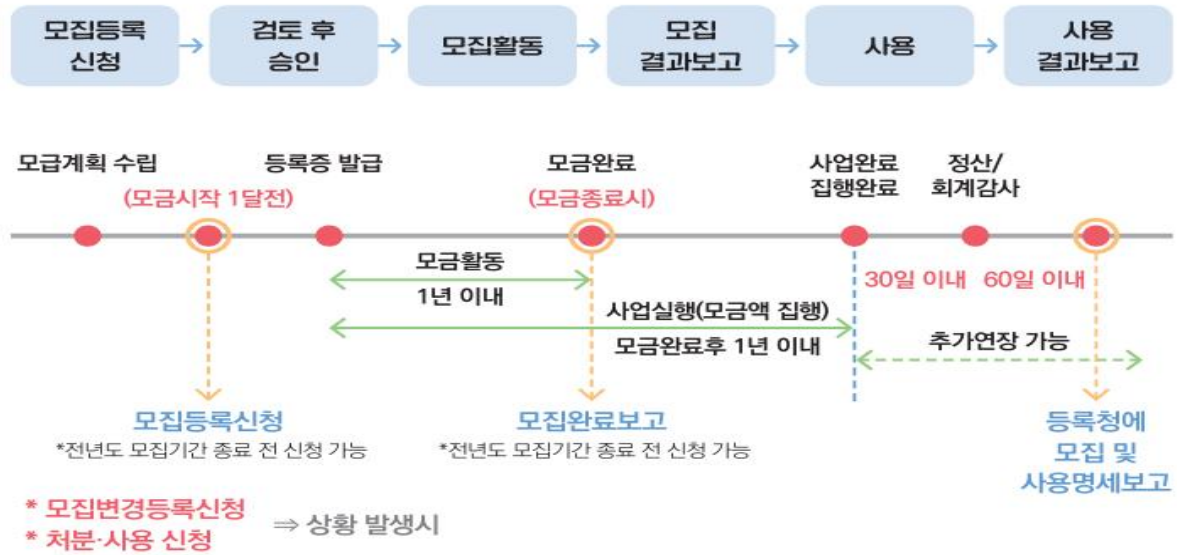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접수 근거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나, 모집·접수 주체를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로 규정할 경우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저하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체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②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체육단체 등을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입법취지, 타 기관·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 1] 기부금품 모집 등록절차 흐름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 (모집등록 신청 검토 주체) ▲모집자의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지사(1천만원 이상~10억원 이하), ▲행정안전부장관(10억원 초과)

[참고자료 2] 대한체육회 기부금 접수 관련 법령

○ 「기부금품법」

「법인세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 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번호	기 부 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